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 주민청구 조례안

의안 번호	3052
----------	------

제출년월일 : 2017.10. .

제 출 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4.16 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가치로서 4.16정신을 계승하고, 4.16 이전과 다른 안산을 만들어가기 위한 시민실천을 통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청구함.

□ 주요내용

- 4.16정신과 도시비전 수립(안 제6조~제7조)
- 참사극복을 위한 기본시책(안 제8조~제11조)
- 4.16정신 계승을 위한 주요시책(안 12조~제19조)
- 추진체계(안 20조~제23조)

□ 주민청구조례안 : 불임1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2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사전예고(결과) : 해당사항 없음

□ 검토 의견서 : 불임3

□ 기타 참고사항(주민청구조례 개요)

- 청구인 : 윤기종(4.16안산시민연대 상임대표)
- 조례제정 청구서 접수 : 2017. 2.27.
- 서명기간 : 2017. 3.10. ~ 2017. 7. 3.(선거기간 제외 4.17.~5.9)
- 명부접수 : 2017. 7.10.(연서주민 수 8,796명)
- 청구인 명부 열람 : 2017. 7.17. ~ 7.27.(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 청구요건심사 : 2017.8.4.(유효서명인수 6,166명으로 청구 수리)

< 불임 1 >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안

전 문

4.16 참사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이고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물질과 경쟁 중심의 사회에서 사람과 생명, 안전 중심의 사회로의 전환을 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와 사회의 운영원리, 운영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안산시는 4.16 참사의 피해지역이라는 아픔을 넘어 새로운 도시비전과 희망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는 4.16 참사가 안산시민에게 부여한 시대적 책임이며 과제이다. 우리는 안산에서부터 한국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찾고, 여기에서 사람 중심의 사회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이 찾게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4.16 참사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한 304명의 희생자들과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책임이다.

이에 생명과 안전의 새로운 도시 비전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시민 모두의 힘을 모아 이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는 4.16의 정신과 가치, 도시비전과 발전전략 수립, 4.16 정신계승 및 참사극복을 위한 시책, 추진체계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이 조례는 4.16 참사의 아픔을 극복하고 희망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안산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의 손길을 모아 제정되었다. 조례로 응집된 시민의 힘이 안산시 운영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4.16 참사와 희생을 기리는 데 밀알이 되기를 희망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16 참사 이후 우리사회가 나가야 할 가치로서 4.16 정신을 계승하고, 4.16 이전과 다른 새로운 안산을 만들고자하는 시민들의 염원과 의지를 모아 안산시의 새로운 도시가치와 비전, 주요 실천과제와 추진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례의 지위)

- ① 이 조례는 안산시의 기본조례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 ② 안산시와 의회는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거나 제도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입법취지와 규정에 부합하도록 한다.

제3조(정의)

- ① '4.16 정신'이라 함은 4.16 참사를 통해 드러난 우리사회의 물질과 경쟁중심의 체제를 극복하고 생명과 안전, 인권과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를 말한다.
- ② '4.16 교육'이라 함은 4.16 참사의 사회적 의미, 우리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 등에 대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책무)

- ① 안산시장은 이 조례가 정하는 도시비전과 시책사업, 추진체계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 ② 안산시의회는 새로운 도시 안산의 비전과 추진계획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5조(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 ① 안산시장은 4.16 참사를 계기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생명과 안전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 ② 안산시장은 생명과 안전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공동선언과 공동실천, 공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제2장. 4.16 정신과 도시비전 계획 수립

제6조(4.16 정신)

- ① 4.16정신은 4.16 참사 이후 안산시와 모든 구성원들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정신으로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생명과 안전의 가치
 2. 인간 및 시민으로서의 권리증진과 보호
 3. 진실과 정의, 민주주의의 가치
 4. 협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성
 5.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감의 가치

제7조(4.16 정신을 반영한 도시비전계획 수립)

- ① 안산시장은 416정신을 기반으로 한 도시비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② 안산시장은 도시비전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 호 등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1. 4.16 정신에 맞는 안산시 도시가치와 비전
 2. 4.16정신에 맞는 시정운영 원리 및 행정운영시스템
 3. 안산시 법정·비법정 계획의 반영 및 연계 방안
 4. 효과적인 추진체계 및 운영방식
 5. 운영에 필요한 재정조달 방안
 6. 기타 필요한 사항

- ③ 안산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장기발전계획, 분야별 법정계획 등을 수립할 때 4.16 정신에 기반 한 도시비전계획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 ④ 안산시장은 시민참여 방식을 통해 도시비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3장. 주요시책

제1절 4.16 참사 극복을 위한 기본시책

제8조(기록을 위한 조치) 안산시장은 4.16 참사와 관련한 과정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전하며, 모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추모사업 추진) 안산시장은 4.16 희생자들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추모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제10조(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 안산시장은 4.16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11조(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속적 조치) 안산시장은 참사 피해자와 아픔을 겪는 모든 시민들의 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절 4.16 정신계승을 위한 주요 시책

제12조(시민현장) 안산시장은 4.16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새로운 안산과 도시비전을 위해 시민현장에 4.16 정신을 반영해야 한다.

제13조(실천선언)

① 안산시장은 4.16 정신을 계승하고 새로운 도시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4.16 실천선언을 권장하고, 지원하며, 발표해야 한다.

제14조(안산 기념일 지정)

① 안산시장은 4월 16일을 기념일로 지정한다.
② 안산시장은 4월 16일에 관내 모든 기업과 기관단체들이 추모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하고 홍보한다.

제15조(교육 추진)

① 안산시장은 4.16 교육을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
② 안산시장은 산하 기관과 위탁기관은 물론 시민교육기관과 단체들이 4.16 교육을 추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③ 안산시장은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교재개발, 강사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한 학교교육 실시) 안산시장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4.16 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학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모든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연구추진) 안산시장은 4.16의 의미와 정신이 체계적으로 해석되고,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4.16 연구를 추진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연대협력 강화) 안산시장은 세계의 재난 피해도시들과 연대협력을 통해 대형 재난의 예방과 극복을 위해 노력한다.

제19조(재정 및 행정 지원) 안산시장은 4.16 관련 모든 활동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장. 추진체계

제20조(시민협의회 구성)

- ① 안산시장은 안산 내 다양한 기관·단체, 시민들과 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협의회는 이 조례가 규정하는 제반 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한다.
 1.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계획 수립지원 및 이행평가
 2. 4.16 참사 극복을 위한 직접적인 조치와 제반 활동 지원
 3. 시민현장 제정 및 시민선언 조직
 4. 4.16 시민교육 추진
 5. 4.16 계승과 실천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시민실천 프로그램 지원
 6. 재난예방과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내외 도시들과 연대와 협력 추진
 7. 기타 본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1조(대표자회의)

- ① 협의회는 참가하는 모든 기관의 대표자 및 공모를 통해 추천된 시민들로 대표자회의를 구성한다.
- ② 대표자회의는 협의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며, 총회를 대신한다.
- ③ 대표자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장 및 약간명의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자세한 운영규정은 별도로 수립하도록 한다.

제22조(실행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 ① 안산시장은 협의회를 대표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30명 내외의 실행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안산시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실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전담부서 지정 및 행정지원협의체)

- ① 안산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 ② 안산시장은 협의회가 행정과 긴밀한 협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행정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 ③ 안산시장은 필요에 따라 협의회가 추천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3052
----------	------

제안년월일 : 2017. 12. 14.
제 안 자 : 성준모 의원 외 9명

1. 수정이유

- 4.16세월호 참사 이후 4.16 신에 따른 안산시의 도시비전과 주요 실천과제를 정하여 지역의 슬픔을 승화시키고 재난이 없는 안전 사회를 건설하고자 주민청구 조례가 제안되었으나
-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시행에 문제가 예상되는 일부 조문을 정비

2. 주요골자

- 조례제정 취지에 대한 전문을 두되 일부 언어를 순화(안 전문)
- 조례의 목적과 구체적 실현수단을 명확히 함 (안 제1조)
- 조례의 지위가 다른 조례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4.16 정신의 계승발 전의 정책수립과 집행에 우선적용 (안 제2조)
-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내용이 중복되어 조정 (안 제5조)
- 도시비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재량규정으로 수정 (안 제6조)
- 기록을 위한 조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기록물의 정의 및 생산·관리 주체를 명확히 규정 (안 제7조)
- 추모사업 추진은 「4.16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

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안 제8조)

-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참사 원인규명 등은 국가사무이므로 같은 법 제39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에 따라 협조 의무로 수정 (안 제9조)
-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속적 노력은 관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맞도록 구체화하여 명시 (안 제10조)
- 매년 4월 16일을 세월호참사 추모 기념일로 지정 운영(안 제11조)
- 4.16교육추진에 따른 경비 지원 근거 명시 (안 제12조)
- 4.16연구추진에 관한 사항 명시 (안 제13조)
- 재정 및 행정지원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정함 (안 제15조)
- 4.16정신계승 시민협의회 구성 기준 수정 (안 제16조)
- 전담부서를 지정 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17조)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 주민청구 조례안 전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산시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 전 문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된 물질만능주의를 배격하는 시대정신이 요구되어, 안산시는 4·16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회적 폐습을 혁신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영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생명과 안전 중심의 가치를 새로운 도시비전으로 정하며, 안산시민과 후손들의 안녕과 행복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과 의지를 담아 안산시의 모든 영역에서 안전사회 실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시민 모두의 힘을 모아 2017년 12월 15일 조례를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4·16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공동체 회복 및 안전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4·16정신의 계승 발전에 필요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16세월호참사"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건을 말한다.
2. "4·16정신"이란 4·16세월호참사를 추모하고 생명과 안전, 인권과 정의

를 지향하는 가치를 말한다.

3. “4·16교육”이란 4·16정신에 관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4조(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도시 비전과 시책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안산시의회는 이 조례가 정하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비전과 시책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4·16세월호참사를 계기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생명과 안전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6조(도시비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4·16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안산시도시비전계획(이하“비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비전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4·16정신을 반영한 시의 도시가치와 비전
2. 4·16정신에 부합하는 시정운영 원리 및 행정운영시스템
3. 법정·비법정 계획에 4·16정신의 반영 및 연계 방안
4. 효과적인 추진체계 및 운영방안
5. 운영에 필요한 재정조달 방안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비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기록을 위한 조치) 시장은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전하며,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8조(추모사업 등 시행) 시장은 「4·16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추모사업 등을 시행해야

한다.

제9조(진상규명의 협조) 시장은 4·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0조(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속적 조치 등) 시장은 법 제3조제1항,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아픔을 겪는 모든 시민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하여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제11조(기념일 지정) 매년 4월 16일을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추모일로 한다.

제12조(교육 추진) ① 시장은 4·16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한다.

② 시장은 교육기관·단체에서 4·16교육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연구추진) 시장은 4·16정신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연대협력 강화) 안산시장은 세계의 재난 피해도시들과 연대협력을 통해 대형 재난의 예방과 극복을 위해 노력한다.

제15조(재정 및 행정 지원) 시장은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4·16정신 계승 시민협의회 구성) ① 시 관내의 다양한 기관·단체,

시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4·16정신 계승 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1.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계획 수립지원 및 이행평가

2. 4·16교육

3. 4·16정신의 계승과 실천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시민실천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전담부서 지정 등) 시장은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블임 2 >

신구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 주민청구 조례</p> <p><u>전 문</u></p> <p>4.16 참사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이고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물질과 경쟁 중심의 사회에서 사람과 생명, 안전 중심의 사회로의 전환을 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가치와 사회의 운영원리, 운영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p> <p>안산시는 4.16참사의 피해지역이라는 아픔을 넘어 새로운 도시비전과 희망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는 4.16 참사가 안산시민에게 부여한 시대적 책임이며 과제이다.</p> <p>우리는 안산에서부터 한국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찾고, 여기에서 사람 중심의 사회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이 찾게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4.16참사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한 304명의 희생자들과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책임이다.</p> <p>이에 생명과 안전의 새로운 도시 비전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시민 모두의 힘을 모아 이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는 4.16의 정신과 가치, 도시비전과 발전전략 수립, 4.16 정신계승 및 참사 극복을 위한 시책, 추진체계를 내용으</p>	<p>안산시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p> <p><u>전 문</u></p> <p>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된 물질만능주의를 배격하는 시대정신이 요구되어, 안산시는 4·16세월호참사와 같은 사회적 폐습을 혁신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영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생명과 안전 중심의 가치를 새로운 도시비전으로 정하며, 안산시민과 후손들의 안녕과 행복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과 의지를 담아 안산시의 모든 영역에서 안전사회 실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시민 모두의 힘을 모아 2017년 12월 15일 조례를 제정한다.</p>

원 안	수 정 안
<u>로 담고 있다.</u> <p><u>또한 이 조례는 4.16 참사의 아픔을 극복하고 희망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안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의 손길을 모아 제정되었다. 조례로 응집된 시민의 힘이 안산시 운영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4.16 참사와 희생을 기리는 데 밀알이 되기를 희망한다.</u></p>	
<u>제1조(목적) 이 조례는 4.16 참사 이후 우리사회가 나가야 할 가치로서 4.16 정신을 계승하고, 4.16 이전과 다른 새로운 안산을 만들고자하는 시민들의 염원과 의지를 모아 안산시의 새로운 도시가치와 비전, 주요 실천과제와 추진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u>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4.16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공동체 회복 및 안전 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
<u>제2조(조례의 지위)</u> <p>① 이 조례는 안산시의 기본조례로서의 지위를 갖는다.</p> <p>② 안산시와 의회는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거나 제도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입법취지와 규정에 부합하도록 한다.</p>	<u>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4.16정신의 계승 발전에 필요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u>
<u>제3조(정의)</u> <p>① '4.16 정신'이라 함은 4.16 참사를 통해 드러난 우리사회의 물질과 경쟁중심의 체제를 극복하고 생명과</p>	<u>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16세월호참사"란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원 안	수 정 안
<p><u>안전, 인권과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를 말한다.</u></p> <p><u>② '4.16 교육'이라 함은 4.16 참사의 사회적 의미, 우리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 등에 대한 교육활동을 말한다.</u></p>	<p><u>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건을 말한다.</u></p> <p><u>2. "4·16정신"이란 4·16세월호참사를 추모하고 생명과 안전, 인권과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를 말한다.</u></p> <p><u>3. "4·16교육"이란 4·16정신에 관한 교육활동을 말한다.</u></p>
<p>제4조(책무)</p> <p><u>① 안산시장은 이 조례가 정하는 도시 비전과 시책사업, 추진체계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u></p> <p><u>② 안산시의회는 새로운 도시 안산의 비전과 추진계획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u></p>	<p>제4조(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도시비전과 시책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p> <p>② 안산시의회는 이 조례가 정하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비전과 시책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p>
<p>제5조(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p> <p><u>① 안산시장은 4.16 참사를 계기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생명과 안전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한다.</u></p> <p><u>② 안산시장은 생명과 안전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공동선언과 공동실천, 공동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u></p>	<p>제5조(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4·16세월호참사를 계기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생명과 안전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p>

원 인	수 정 안
<p>제6조(4.16정신)</p> <p>① 4.16정신은 4.16 참사 이후 안산시와 모든 구성원들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정신으로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p> <p>1. 생명과 안전의 가치</p> <p>2. 인간 및 시민으로서의 권리증진과 보호</p> <p>3. 진실과 정의, 민주주의의 가치</p> <p>4. 협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성</p> <p>5.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감의 가치</p>	< 삭 제>
<p>제7조(4.16정신을 반영한 도시비전계획 수립)</p> <p>① 안산시장은 4.16정신을 기반으로 한 도시비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p> <p>② 안산시장은 도시비전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 호 등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p> <p>1. 4.16 정신에 맞는 안산시 도시가치와 비전</p> <p>2. 4.16정신에 맞는 시정운영 원리 및 행정운영시스템</p> <p>3. 안산시 법정·비법정 계획의 반영 및 연계 방안</p> <p>4. 효과적인 추진체계 및 운영방식</p> <p>5. 운영에 필요한 재정조달 방안</p> <p>6. 기타 필요한 사항</p> <p>③ 안산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장기발전계획, 분야별 법정계획 등을 수립할 때 4.16 정신에 기반 한 도시비전계획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p>	<p>제6조(도시비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4.16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안산시도시비전계획(이하 “비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의 비전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p> <p>1. 4.16정신을 반영한 시의 도시가치와 비전</p> <p>2. 4.16정신에 부합하는 시정운영 원리 및 행정운영시스템</p> <p>3. 법정·비법정 계획에 4.16정신의 반영 및 연계 방안</p> <p>4. 효과적인 추진체계 및 운영방식</p> <p>5. 운영에 필요한 재정조달 방안</p> <p>6. 그 밖에 필요한 사항</p> <p>③ 시장은 제1항의 비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p>

원 인	수 정 안
<p>④ 안산시장은 시민참여 방식을 통해 도시비전계획을 수립해야한다.</p> <p><u>제8조(기록을 위한 조치) 안산시장은 4.16 참사와 관련한 과정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전하며, 모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u></p> <p><u>제9조(추모사업 추진) 안산시장은 4.16 희생자들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추모사업을 전개해야 한다.</u></p> <p><u>제10조(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 안산 시장은 4.16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u></p> <p><u>제11조(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속적 조치) 안산시장은 참사 피해자와 아픔을 겪는 모든 시민들의 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u></p> <p><u>제12조(시민헌장) 안산시장은 4.16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새로운 안산과 도시비전을 위해 시민헌장에</u></p>	<p><u>제7조(기록을 위한 조치) 시장은 4·16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전하며,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u></p> <p><u>제8조(추모사업 등 시행) 시장은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추모사업 등을 시행해야 한다.</u></p> <p><u>제9조(진상규명의 협조) 시장은 4·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u></p> <p><u>제10조(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속적 조치 등) 시장은 법 제3조제1항,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아픔을 겪는 모든 시민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하여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u></p>

< 삭 제>

원 안	수 정 안
<u>4.16 정신을 반영해야한다.</u>	
<u>제13조(실천선언) ① 안산시장은 4.16 정신을 계승하고 새로운 도시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4.16 실천선언을 권장하고, 지원하며, 발표해야 한다.</u>	<u>< 삭 제 ></u>
<u>제14조(안산기념일 지정)</u> ① 안산시장은 4월 16일을 기념일로 지정한다. ② 안산시장은 4월 16일에 관내 모든 기업과 기관단체들이 추모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하고 홍보한다.	<u>제11조(기념일 지정) 매년 4월 16일을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추모일로 한다.</u>
<u>제15조(교육 추진)</u> ① 안산시장은 4.16 교육을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 ② 안산시장은 산하 기관과 위탁기관은 물론 시민교육기관과 단체들이 4.16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③ 안산시장은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교재개발, 강사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u>제12조(교육 추진) ① 시장은 4·16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한다. ② 시장은 교육기관·단체에서 4·16교육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제16조(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한 학교 교육 실시) 안산시장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4.16 교육이 보다 체계</u>	<u>< 삭 제 ></u>

원 안	수 정 안
<p>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학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모든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p> <p><u>제17조(연구추진)</u> 안산시장은 4·16의 의미와 정신이 체계적으로 해석되고,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4·16 연구를 추진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 및 지원하여야 한다.</p> <p><u>제18조(연대협력 강화)</u> 안산시장은 세계의 재난 피해도시들과 연대협력을 통해 대형 재난의 예방과 극복을 위해 노력한다.</p> <p><u>제19조(재정 및 행정 지원)</u> 안산시장은 4·16 관련 모든 활동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p> <p><u>제20조(시민협의회 구성)</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산시장은 안산 내 다양한 기관·단체, 시민들과 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이 조례가 규정하는 제반 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한다. 	
	<p><u>제13조(연구추진)</u> 시장은 4·16정신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p> <p><u>제14조(연대협력 강화)</u> 안산시장은 세계의 재난 피해도시들과 연대협력을 통해 대형 재난의 예방과 극복을 위해 노력한다.</p> <p><u>제15조(재정 및 행정 지원)</u> 시장은 4·16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p> <p><u>제16조(4·16정신 계승 시민협의회 구성)</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 관내의 다양한 기관·단체, 시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4·16정신 계승 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원 인	수 정 안
<p>1.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계획 수립지원 및 이행평가</p> <p>2. 4.16 참사 극복을 위한 직접적인 조치와 제반 활동 지원</p> <p>3. 시민현장 제정 및 시민선언 조직</p> <p>4. 4.16 시민교육 추진</p> <p>5. 4.16 계승과 실천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시민실천 프로그램 지원</p> <p>6. 재난예방과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내외 도시들과 연대와 협력 추진</p> <p>7. 기타 본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p>	<p>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p> <p>1.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계획 수립지원 및 이행평가</p> <p>2. 4.16교육</p> <p>3. 4.16정신의 계승과 실천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시민실천 프로그램 지원</p> <p>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p> <p>④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제21조(대표자회의)</p> <p>① 협의회는 참가하는 모든 기관의 대표자 및 공모를 통해 추천된 시민들로 대표자회의를 구성한다.</p> <p>② 대표자회의는 협의회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이며, 총회를 대신한다.</p> <p>③ 대표자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장 및 약간명의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자세한 운영규정은 별도로 수립하도록 한다.</p>	<p>< 삭 제 ></p>
<p>제22조(실행위원회, 분과위원회 등)</p> <p>① 안산시장은 협의회를 대표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30명 내외의 실행위원회를 구성한다.</p>	<p>< 삭 제 ></p>

원 안	수 정 안
<p>② 안산시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실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u>제23조(전담부서 지정 및 행정지원협의체)</u></p> <p>① 안산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p> <p>② 안산시장은 협의회가 행정과 긴밀한 협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행정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p> <p>③ 안산시장은 필요에 따라 협의회가 추천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p>	<p><u>제17조(전담부서 지정 등)</u> 시장은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p>
<p><u>제24조(시행규칙)</u>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제18조(시행규칙)</u>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u>부 칙</u>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u>부 칙</u>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